

# 나고야의정서 미준수로 인한 법적 분쟁 예상사례



본 강의자료는 강의자의 개인 견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목차

1. 사고야 의정서의 핵심 개념과 특징
2. 분쟁 예상 사례 1 - PIC 위반
3. 분쟁 예상 사례 2 - MAT 관련
4. 분쟁 예상 사례 3 - 특허 분쟁
5. 기본적인 대응방안

# 1.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개념과 특징

## ◆ 유전자원에 대한 원산지국의 주권적 소유권 인정

### ➤ 생물다양성 협약(나고야 의정서의 母 협약) 제15조 제1항

“국가가 자신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 국가의 정부에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국가입법에 따른다”(생물다양성 협약 제15조 제1항)

### ➤ 나고야 의정서 :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보충협정

“자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각국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하고...”(나고야의정서 전문)

# 1.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개념과 특징

## ◆ PIC(Prior Informed Consent)과 MAT(Mutually Agreed Terms)

- 유전자원 이용 목적의 접근에 대한 관계기관의 사전승인(PIC)
  - 유전자원 이용,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관한 상호합의조건(MAT)
-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은 토착공동체부터 PIC과 MAT 획득

# 1.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개념과 특징

## ◆ 몇 가지 이슈 : 유전자원의 이용?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 유전자원의 이용 :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및/또는 생화학적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는 것[나고야의정서 제2조 (c)].

∴ 비상업적 연구에도 적용가능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 각국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e.g. 중국 한의학 지식, 아마존 원시부족의 민간요법지식)

# 1.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개념과 특징

## ◆ 불가피한 모호성 · 미완결성 · 상이성

### ➤ 나고야 의정서 자체의 모호성과 미완결성

- 원산지국과 유전자원 이용국 간의 이해차이에서 비롯

e.g.) 원산지국의 범주, 유전자원의 범위, 의정서 발효 전 취득한 유전자원 접근시 처리방안, 토착공동체의 판단 등

# 1.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개념과 특징

## ◆ 불가피한 모호성 · 미완결성 · 상이성(계속)

- 가입국은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입법적, 정책적 조치 의무 부담
- 원산지국과 유전자원 이용국의 이해관계, 나고야 의정서 자체의 모호성, 세부적인 지침이나 해석론의 부재로 각국별 법제의 상이성 발생
- 유전자원 접근시 각국의 법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 발생
  - ※ 국제조약인 나고야 의정서보다는 그에 기초하여 제정된 해당 원산지국의 법률에 더 유의할 필요

## 2. 분쟁 예상 사례 1 – PIC위반

### ◆ 예상사례

- A대학 생명공학과에 재직 중인 B교수는 C국이 원산지인 알로에가 피부 미용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그 성분을 연구한 후 미백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발견하고 이를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B교수는 아직 해당 성분을 상업화한 것이 아니고 연구목적으로 활용한 것이어서 나고야 의정서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PIC과 MAT을 획득하지 않았다.

어느 날, B 교수는 C국의 대리인 자격으로 모 로펌이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C국법을 위반하여 유전자원에 접근한 점을 지적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경고하면서 연구결과 공유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 2. 분쟁 예상 사례 1 – PIC위반

### ◆ 예상사례

- A사는 C국에 소재한 B사로부터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C국이 원산지인 편백나무 추출물질을 수입하고자 한다. A사는 B사가 제시하는 문서를 통해 B사가 C국 정부로부터 PIC과 MAT을 확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제품 출시를 앞두고 C국 정부로부터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한국 정부가 A사에 대해 PIC없이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C국 정부 또한 자체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A사는 B사로부터 받은 PIC 및 MAT 관련 서류들을 제시하며 항변하였으나 추가 조사 결과 B사는 C국 기업에 한해 의약품 제조목적으로만 해당 물질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PIC 및 MAT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분쟁 예상 사례 1 – PIC위반

### ◆ 예상사례

- A사는 국내 재래시장에서 대량으로 한약재를 구입하여 탈모용 샴푸의 원료물질로 활용하고 있다. 구입 당시 한약재의 출처를 확인하였을 때 국산이어서 나고야 의정서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는 모 로펌으로부터 해당 한약재는 중국이 원산지이며 국내에서 재배된 것은 맞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도착화되지 않은 작물을 농가가 임의로 국내에서 경작한 것이므로 A사가 PIC과 MAT 없이 중국의 유전자원을 상업화하고 있다는 경고성 연락을 받았다.

## 2. 분쟁 예상 사례 1 – PIC위반

### ◆ 예상사례

- A사는 마카다미아를 이용하여 두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 식품을 연구, 개발 및 시판하고자 C국이 원산지인 마카다미아를 C국 소재 B사로부터 수입하고자 한다.

A사는 B사로 하여금 C국의 PIC과 MAT을 획득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사는 아직 C국에는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후속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PIC과 MAT을 취득할래야 할 수 없고 B사의 규모가 영세하여 그런 법적 절차를 밟을 여력이 없다며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2. 분쟁 예상 사례 1 – PIC위반

### ◆ 예상사례(계속)

B사 외에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마카다미아를 대량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A사는 하는 수 없이 PIC과 MAT 없이 B사가 공급한 마카다미아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제품출시 직전 B국은 PIC과 MAT에 관한 입법을 마련하였다.

## 2. 분쟁 예상 사례 1 – PIC위반

◆ PIC 위반의 본질 : 타인 소유 자산의 무단 이용 및 절취, 인허가 미획득

### ◆ 관련 분쟁

#### ➤ 형사적 분쟁

- 원산지국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름

- 한국법에는 형사처벌 근거 없음

- 범죄인인도조약 적용대상? :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현가능성 낮음

e.g.) 한-필리핀 범죄인인도조약 : 쌍방 당사국의 법률에서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보다 더 중한 형에 해당하는 범죄

## 2. 분쟁 예상 사례 1 – PIC위반

### ◆ 관련 분쟁(계속)

#### ➤ 행정적 분쟁

- 주로 원산지국 법률에 따른 제재 예상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국에 인적·물적시설이 있는 경우 타격이 큼

e.g.) 영업정지, 사업장폐쇄, 세무조사, 과징금 등

## 2. 분쟁 예상 사례 1 – PIC위반

### ◆ 관련 분쟁(계속)

#### ➤ 민사적 분쟁

-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생산물판매금지가처분 등
  - 원고 : 원산지국 정부
  - 원산지국 법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에도 제소가 가능
  - 준거법,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서 법적 쟁점 다수 상존
- e.g.) 원산지국법에서 PIC 없이 유전자원을 상용화한 경우 해당 상용 매출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3. 분쟁 예상 사례 2 – MAT 관련

## ◆ 예상 사례 (1) - MAT 체결 과정에서의 분쟁

- A사는 B국을 원산지로 하는 가지에 여드름 치료에 좋은 천연물이 있음을 해외 논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A사는 해당 천연물을 이용해 여드름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B국으로부터 PIC을 획득하였으며 다음 절차로서 B국과 MAT을 체결하려 한다.

B국은 자국 양식이라며 계약서 초안을 보내왔는데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독소조항으로 지목되었다.



# 3. 분쟁 예상 사례 2 – MAT 관련

## ◆ 예상 사례 (1) - MAT 체결 과정의 분쟁(계속)

- 과도한 로열티 : 매출액의 5% 요구
- 기술공개 : 가지의 천연추출물과 관련된 사항 외에 여드름 치료제와 관련한 모든 기술의 공유
- 계약위반시 과도한 배상액
-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식 : 계약은 B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B국의 법원에서만 분쟁해결 가능. B국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음

# 3. 분쟁 예상 사례 2 – MAT 관련

## ◆ 예상 사례 (1) - MAT 체결 과정의 분쟁(계속)

A사는 B국과 적절한 선에서 위 독소조항들을 타협하기를 원하지만 B국은 확립된 자국의 계약서 양식이라며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에 A사는 어느 정도까지 독소조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체결을 포기하고 다른 도입처를 물색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 3. 분쟁 예상 사례 2 – MAT 관련

## ◆ 예상 사례 (2) - MAT 이행 과정의 분쟁

- MAT은 사적인 계약이므로 미 이행시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적 조치 가능
  - 계약이행청구 : 로열티지급청구, 연구시설신축이행청구, 기술이전청구, 특허권자 공동등록청구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 유전자원의 사용중단, 손해배상의무 발생
  - 기타 MAT에 규정된 계약위반시 조치들

# 4. 분쟁 예상 사례 3 – 특허 분쟁

## ◆ 유전자원 제공국 및 원산지 등 관련 정보 공개의무 부과

- 유전자원을 이용한 특허의 해외출원시 자원제공국, 원산지 등 공개 의무, PIC과 MAT 이행 증빙서류 제공의무 부과
- 미이행시 등록거절, 특허무효 등 분쟁 발생 가능
- 대표적인 정보공개요구국가 : 중국, 인도 등
- 분쟁에서의 쟁점
  - 주지성
  - 정보 공개의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

# 5. 기본적인 대응방안

## ◆ 원료물질의 원산지국 확인

- 원산지국이 외국인가, 한국인가
- 원산지국의 판정
  - 원산지국 : 유전자원이 현지내 상태로 존재하는 나라
  - 현지내 상태 : (1)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 존재  
(2) 사육종 또는 배양종인 경우 토착화된 상태
  -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www.kbr.go.kr](http://www.kbr.go.kr))

# 5. 기본적인 대응방안

## ◆ 해외 유전자원으로 확인되면 PIC과 MAT의 요구여부 확인

- 국가별 연락기관과 책임기관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상 정보참조
  - <http://www.abs.go.kr/kabsch/program/nation/list.do?cid=48>
  - PIC과 MAT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음
- 직도입뿐 아니라 중개상을 통한 도입의 경우에도 확인 필요
- 국제의무준수인증서 확인
  - ABSCH에 제공된 증명서[나고야 의정서 제6조 제3항 (e)]
  - Registered Collection으로부터 입수(EU)
  - 제3자 제공가능 여부, 이용목적 확인

# 5. 기본적인 대응방안

## ◆ 필요시 PIC 획득

- ▶ 가급적 MAT 조건이 우호적인 나라의 PIC 획득
- ▶ 나고야 의정서 미가입국(e.g. 미국, 호주)으로 원료물질 도입선 다 변화

단 이 경우에도 PIC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유의

e.g.) 미국 기업이 PIC없이 나고야 의정서 가입국으로부터 취득한 원료물질을 제공하는 경우

# 5. 기본적인 대응방안

## ◆ MAT 체결

- 애로사항 : 협상력, 이미 확정된 계약서 양식
- 주요 협의 사항
  - 준거법과 분쟁해결방안(중재 or 관할법원)
  - 이익공유의 종류(금전적, 비금전적)와 정도
  - MAT 위반시 뒤따르는 패널티의 수준



# 5. 기본적인 대응방안

## ◆ 국내법상 신고의무

➤ 한국 정부에 대한 해외 유전자원취득신고의무 이행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감사합니다.

- 끝 -